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2171
----------	------

발의연월일 : 2017년 10월 24일  
발 의 자 : 서윤기 · 강성언 · 김문수  
김태수 · 김동승 · 박기열  
김혜련 · 신언근 · 이순자  
김동율 · 김기대 · 김용석(도봉)  
김희걸 · 이승로 · 남창진  
김광수(노원) · 진두생 · 오경환  
박준희 · 김기만 · 황규복  
김정태 · 박운기 · 박호근  
신원철 의원(25명)

## 1. 주 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과 임용규정이 국가직과 지방직 간에 상이한 바,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을 통해 행정의 안정적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직과 지방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방법과 근무기간 연장이 상이함.

-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국가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기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없음.
- 또한, 전문직 및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국가직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의제6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근무 실적이 탁월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근무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 단절에 따른 불안정한 행정 집행 초래는 물론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간 고용 차별이 존재하여 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임.

### 3. 이 송 처

- 국회,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안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에 따라 복잡화·다양화·전문화 추세에 있으며, 각 자치단체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바이오, ICT 등 지역에 맞는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에 전문적 행정 업무를 수행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각종 현안과 주민관심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지방직 임기제 공무원은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임용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총 5년을 초과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은 총 5년의 근무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임기제 고용에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인재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과 임용규정의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을 통해 행정의 안정적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직과 지방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임기제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7. 10.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